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507호
2. 발 의 자 : 이승미 의원
3. 발의일자 : 2023. 2. 6.
4. 회부일자 : 2023. 2. 9.

II . 제안이유

- 대안교육지원센터는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23.1.12.)으로 기존 조례가 폐지되며 센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시행으로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책무도 커짐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기존 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관리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지원을 위하여 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입법예고)
  - 기간 : 2023. 2. 14. ~ 2. 19.
  - 제출의견 : 111건, 제출의견 전부 등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함.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승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507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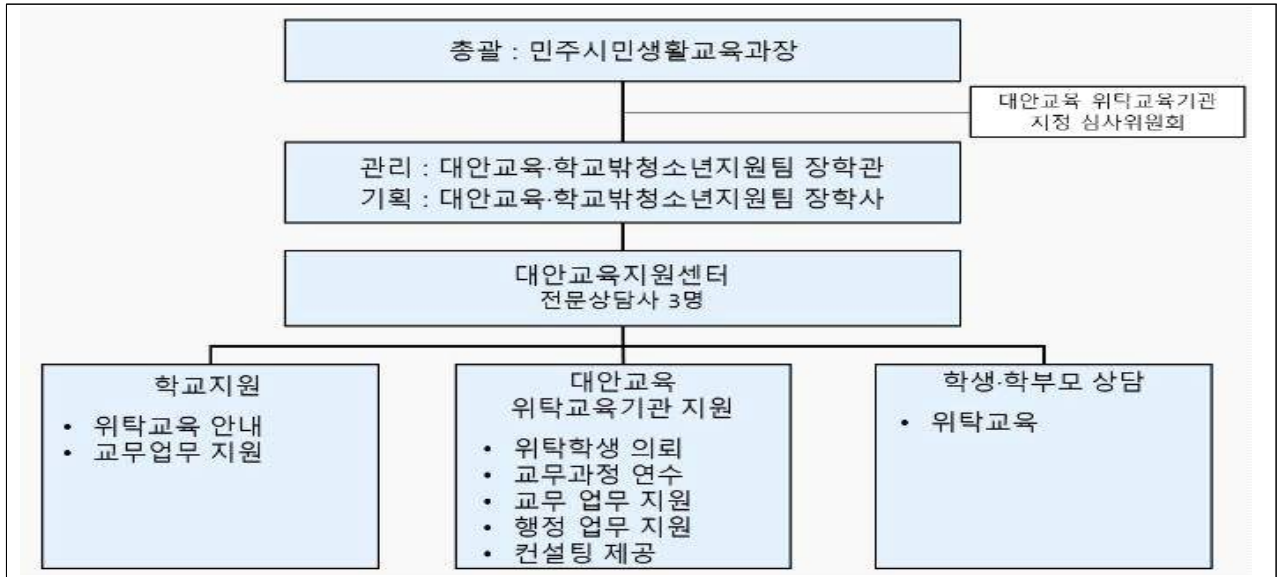
- 지난 2017년 서울시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sup>1)</sup>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 조례는 2003년부터 운영되었던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가 되어왔습니다.<sup>2)</sup>

[표-1]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현황

2001년 2002년 2기관	→	2003년 4기관	→	2004년 8기관	→	2005년 10기관	→	2006년 16기관	→	2007년 15기관	→	2008년 18기관	→	2009년 2010년 17기관	→	2011년 23기관	→	2012년 30기관
																		↓
2023년 42기관	←	2022년 44기관	←	2021년 43기관	←	2020년 40기관	←	2019년 39기관	←	2017년 2018년 38기관	←	2016년 40기관	←	2015년 42기관	←	2014년 40기관	←	2013년 38기관

1) 학생을 정규학교에서 위탁받아 교육. 위탁기관의 출결이 정규학교 출결과 연결되고 정규학교 졸업장 취득.  
 2) 제5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2]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조직 현황<sup>3)</sup>



○ 그러나 금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시행<sup>4)</sup>되면서 동 조례 부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폐지되었습니다.<sup>5)</sup>

○ 한편 지난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sup>6)</sup>됨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sup>7)</sup>

또한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기존에 교육청이 지원해오던 위탁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3)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4) (2022.12.22.)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수정가결, (2023.1.12.) 공포 및 시행.

5)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6) 법률 제17887호, 2021. 1. 12. 제정, 2022. 1. 13. 시행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 ⑤ (생략)

‘서울시가 지원해오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위탁교육기관과 함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상기의 법률 및 조례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안교육기관 등록체제 구축 T/F’를 구성·운영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 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22년 5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2022. 12. 22.)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의 수정가결 이후에도 여전히 대안교육센터를 유지·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대안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동 센터의 운영은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지원하던 40여개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 2월 기준 교육청에 등록을 마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57개나 대폭 증가되었는바, 서울시가 담당해오던 재정 지원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sup>8)</sup>
-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와 같이 센터를 유지할 경우 현재 서울시교육

---

8) 그동안 서울시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10명의 직원이 주로 대안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평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해왔음.

청의 각종 사업 관련 센터는 32개에 달하는 바(붙임 참조), 각종 센터 운영이 확대될 경우 예산 부담 가중 문제 발생, 과도한 사업 세분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 야기, 각 센터가 정책 업무보다 존립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서 대안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 교육청 내의 업무 경감 측면, 그리고 센터의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증가와 이용자 혼란, 조직의 목적 전치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는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② 지원센터는 교육기관의 등록(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③ 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현재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조례)를 마련한 타 시·도교육청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내용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sup>9)</sup>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 2023. 2. 13.).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운영)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 2180-8269
----------	------------------	-------	------------------

[붙임]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센터 운영 현황(2022. 10. 1. 기준)

연번	센터명	개소
1	공익제보센터	1
2	교육행정지원센터	1
3	서울교육콜센터	1
4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1
5	서울학부모지원센터	1
6	지역교육복지센터	25
7	학교혁신지원센터	1
8	과학교육센터	11
9	발명교육센터	21
10	영재교육지원센터	1
11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1
12	서울학습도움센터(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12
13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	1
14	학교도서관지원센터	11
15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1
16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1
17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
18	위(Wee)센터	26
19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1
20	<b>대안교육지원센터</b>	<b>1</b>
21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5
22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2
23	학생인권교육센터	1
24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3
25	취업지원센터	1
26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종합지원센터	1
27	특수교육지원센터	11
28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
29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1
30	나이스콜센터	1
31	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	1
32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2